

# 보건복지부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진주시,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 및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후원자가 그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 운영충당 적립금, 환경개선 준비금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비의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경상남도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비지정후원금 집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창원시 ‘○○○○○아동센터’ 등 5개 사회복지시설은 비지정후원금을 사용불가 과목에 집행하였다.

또한, 창원시 ‘○○○○’ 등 26개 사회복지시설은 비지정후원금 집행액의 50%를 초과하여 간접비로 사용하였으며, 창원시 ‘○○○아동센터’ 등 4개 사회복지시설은 비지정후원금 집행액의 15%를 초과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 진주시장, 창녕군수, 고성군수, 하동군수, 함양  
군수, 거창군수는

비지정후원금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